

충청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 · 2007.2.26(월)

충청북도재정보조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연 기 봉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필용,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흙, 이종호, 조영재,
(7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07년 2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2월 20일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1)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를 제29조로 하고(2005.8.4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을 제36조(2005.12.30 개정)로 함
(안 제1조).

(2)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 60%, 징수실적 40%에서 인
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2006.11.23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하여 도내 시군간 재정불균형 완화(안 제
6조제1항).

나.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40은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세징수율을 제고하고 또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또는 균형발전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신설)

다.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6월과 12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보전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안 제12조 신설)

5. 검토의견

재정보전금은 도내 시군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음.

재정보전금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 60%, 징수실적 40%로 배분되어 인구와 징수실적이 많은 지역 즉,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배분기준을 인구 50%, 징수 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하여 시·군간 재정불균형이 완화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음.

재정보전금의 10%를 차지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시책추진의 방향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군간 재정불균형이 심한 우리 도의 경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낙후지역개발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추가하는 사항과

또한 도세징수실적¹⁾에 대해서는 일반재정보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도세징수율²⁾ 제고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그리고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보전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붙임 1.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참고자료(재정보전금제도 개요)

1) 도세징수실적 : 도세 총액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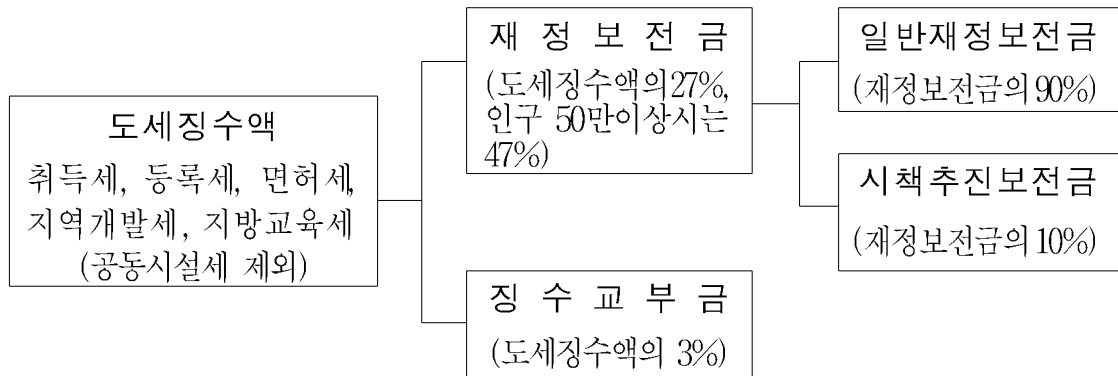
2) 도세징수율 :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참고자료 1]

재정보전금제도 개요

□ 재정보전금이란

-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간 재정력 불균형 완화(재정형평화)를 목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2000년부터 징수교부금제도와 재정보전금제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재정보전금 재원은 도세징수액의 27%(인구 50만 이상시는 47%)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 종전 징수교부금(도세징수액의 30%, 인구 50만 이상시는 50%) 제도를 징수교부금은 3%로 일원화하고 재정보전금 제도를 신설하였음.

□ 재정보전금 재원

- 지방재정법 제29조 (市·道の 市·郡에 대한 財政補填)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 재정보전금 종류 및 배분방법

구 분	재 원 및 배 분 기 준		비 고
재정보전금 (100%)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세징수액의 27%(인구 50만이상 시는 47%) ※ 도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는 제외) 	
일반(재정) 보 전 금 (90%)	배분 기준	일반재정보전금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구 수 비 율 : 50% - 징수실적 비 율 : 40% - 재 정 력 지 수 : 10%
특별재정보전금 (25%)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재정감소액 보전	우리도 없음
시 책 추 진 보 전 금 (10%)	배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 도세징수실적 우수단체 필요사업 -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